

|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 금융감독원 | <b>보도 참고</b> | 금융은 투자를 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|
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
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  | 배포시            | 배포         | 2024.11.7.(목)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부서 | 연금감독실<br>연금감독팀 | 책임자<br>담당자 | 팀장<br>수석조사역   | 이상탁<br>한태진 | (02-3145-5190)<br>(02-3145-5183) |

## [금융꿀팁] <156>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
-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**금융상품 관련 꿀팁**을 **안내**하고 있습니다.
- 이번에는 **156번째로 퇴직연금 실물이전\* 서비스 신청**과 관련한 **가입자 유의사항**에 대해 알기 쉽게 **안내**해 드립니다.

\*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할 때 가입자 요청에 따라,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

### 〈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시 핵심 확인사항〉

- ① 실물이전은 새롭게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(수관회사)에 신청하세요
- ② 동일 제도 내에서의 이전(DB↔DB, DC↔DC, IRP↔IRP)만 가능합니다
- ③ 퇴직연금계약 형태 및 상품 특성상 실물이전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요
- ④ 이·수관회사 모두 취급하는 상품만 실물이전이 가능함에 유의하세요
- ⑤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됩니다
- ⑥ 신청 후 최종 이전의사 확인이 있어야 실물이전 처리가 가능해요
- ⑦ 실물이전 이후에도 가입자의 지속적 관리와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해요

## 1

## 실물이전은 수관회사에 신청\*

\* 수관회사에 이미 퇴직연금계좌가 개설되어있는 경우 이관회사에서도 신청가능

◆ 실물이전은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(수관회사)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기존 가입회사(이관회사)에서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실물이전 진행

-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(이하 ‘수관회사’)\*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.

\* 단,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,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하여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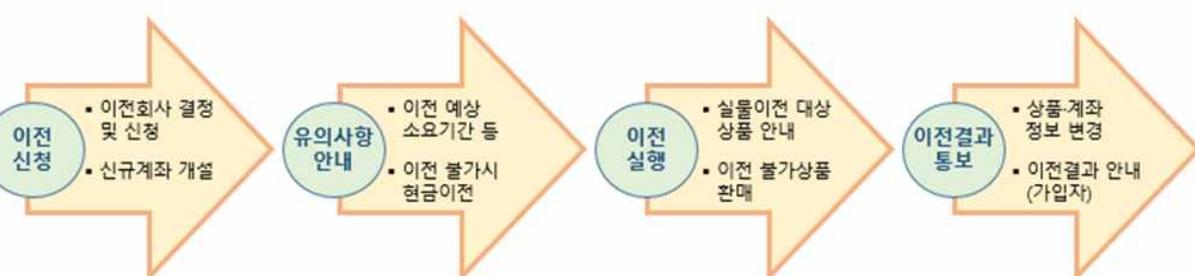
- 이후,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퇴직연금 사업자(이하 ‘이관회사’)가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안내\*하여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받게 되며,

\* 가입자가 이관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수관회사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및 동일 상품 미취급시 처리방안(현금이전) 등

- 가입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,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,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.

\* 상품 편입 없이 현금성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실물이전이 아닌 현금이전을 신청해야 함에 유의

### < 실물이전 절차 >



##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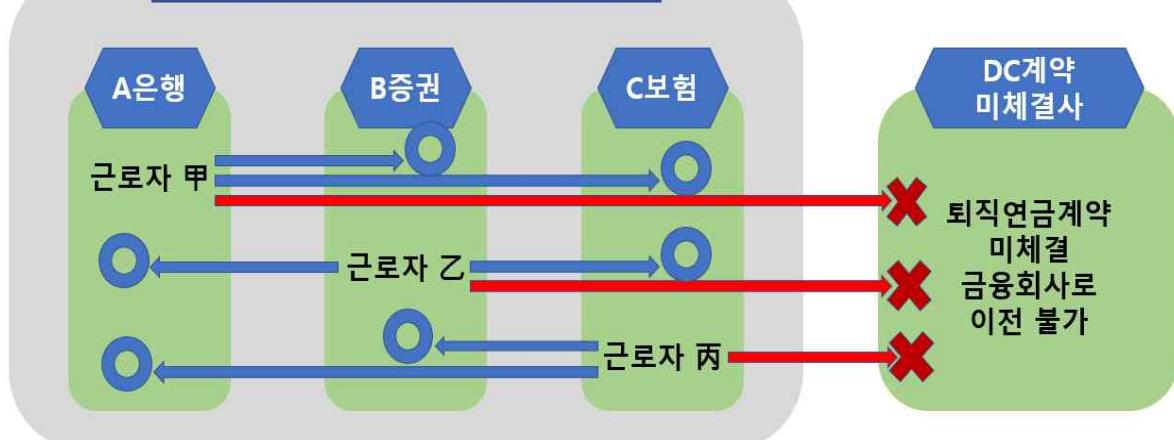
## 실물이전은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가능

◆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내(DB↔DB, DC↔DC, IRP↔IRP)에서 가능

-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간(DB ↔ DB, DC ↔ DC, IRP ↔ IRP)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  - IRP 간 이전은 가입자(계약 주체)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여 이전할 수 있으나,
  - DB 간, 또는 DC 간 이전은 회사(계약 주체)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간에만 이전이 가능하므로,
    - DC 제도의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내에서의 이전만 가능합니다.
- 또한, 퇴직연금계좌인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의 이전시 실물이전은 불가하며, 현금이전만 가능합니다.

### DC형 퇴직연금의 이전 가능여부(예시)

#### DC형 퇴직연금 계약 체결 기업



◆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계약, 디폴트옵션 상품 등과 같이 계약 또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한 경우가 존재

- 퇴직연금의 계약 형태\*, 운용 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

\* 퇴직연금(자산관리)계약은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 형태로 체결되는데, 보험계약으로 체결되는 퇴직연금(자산관리)계약 구조에서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실물이전이 불가

-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를 참고하여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
\* 하단 「실물이전 제외 대상」 참고

#### 실물이전 제외 대상

- ◆ 일부 상품은 계약 형태, 상품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<sup>\*</sup> 되며, 특정 상황 발생 등에 따른 일부 상품<sup>\*\*</sup>도 실물이전이 불가

\* (계약 형태)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(자산관리)계약, 언번들형 계약(사용자가 운용관리 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)

(상품 특성)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(디폴트옵션), 지분증권, 리츠, 사모펀드, ELF, 파생결합증권, RP, MMF, 종금사 발행어음 등

\*\* 상품제공수수료 부과상품(단, 수관회사의 판단으로 실물이전 가능여부 선택 가능), 임의해지 대상 소규모펀드,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, 압류 및 질권 설정 상품, 자사 원리금보장상품, 환매불가 펀드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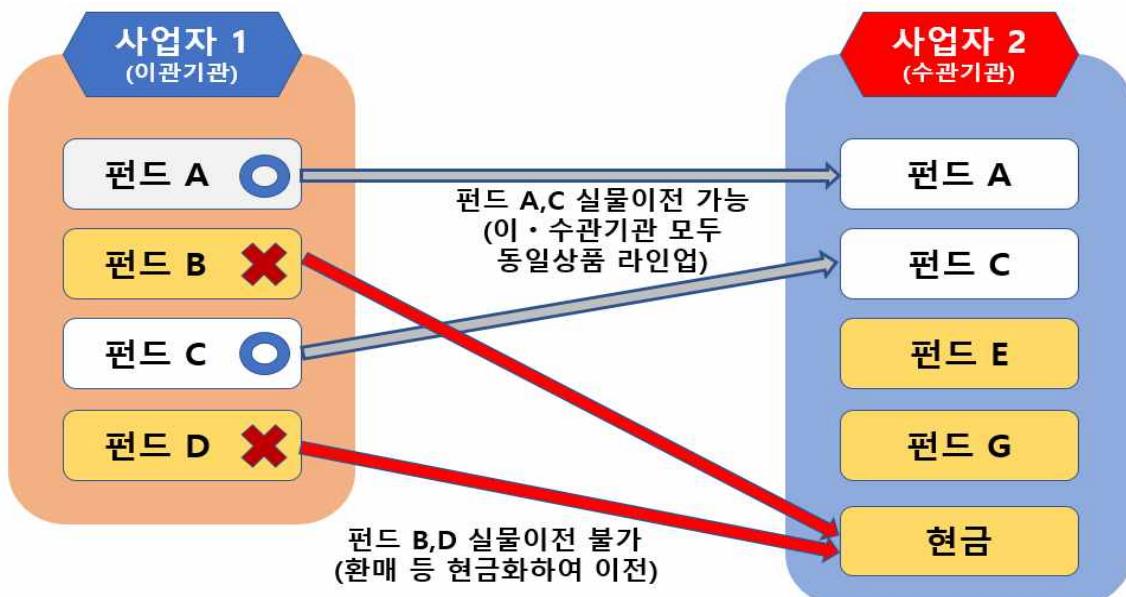
## 4

## 이 · 수관회사 모두 취급하는 상품만 실물이전 가능

◆ 운용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새로 옮겨가는 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을 취급(라인업)하고 있어야 실물이전 가능

-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(예금, GIC, ELB·DLB 등), 공모펀드(MMF 제외), 채무증권,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모두 실물이전 대상 상품에 해당합니다.
- 다만,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(수관회사)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(라인업)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.
- 즉,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,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\*은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합니다.
- \* 실물이전이 불가한 **상장상품**이 있는 경우에는 **가입자가 직접 해당 상품을 매도해야 하며, 일정기간 내 매도하지 않을 경우 실물이전이 취소될 수 있음**
- 이 경우, 상품 매도로 인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는 등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상품 라인업에 따른 실물이전 가능 여부(예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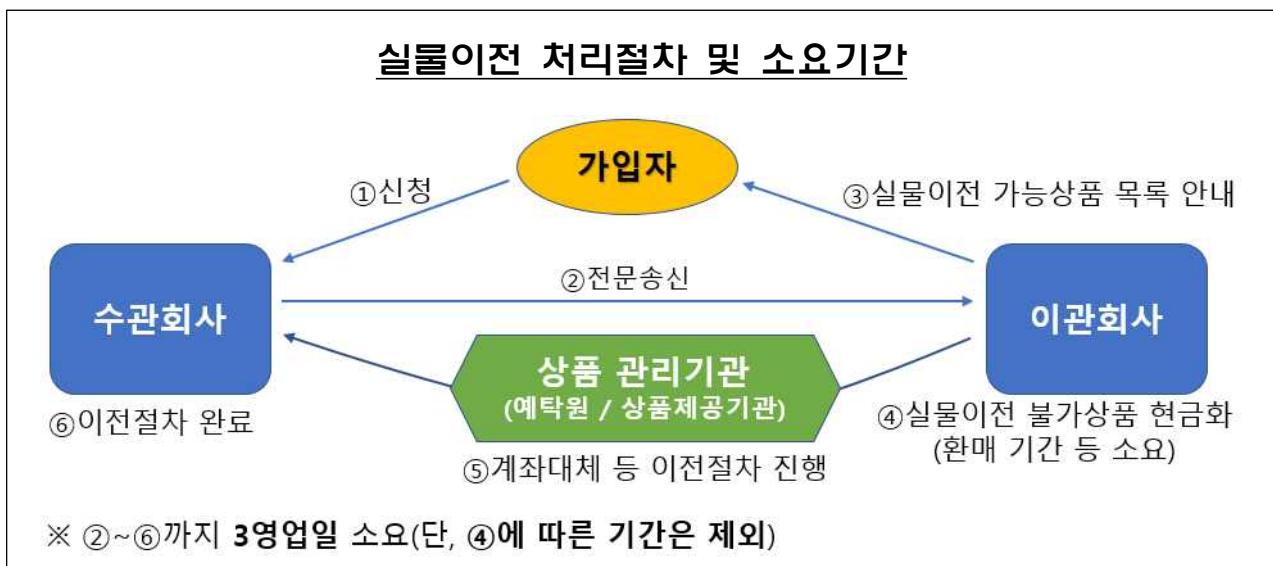


## 5

##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 최소 3영업일 소요

◆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는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되며,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추가됨

- 가입자가 실물이전 신청시 수관회사는 해당 실물이전 관련 전문을 송신(이관회사는 이를 수신)하게 되며, 이때 실물이전 절차가 시작됩니다.
- 동 전문의 송신을 기준으로 최소 3영업일\*이 소요되며,
  - \* 전문송신이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이루어질 경우 3영업일,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4영업일
- 실물이전 과정에서 현물이전이 불가하여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\*에는 해당 기간만큼 실물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.
  - \* 해외펀드 등 환매기간이 긴 경우 실물이전 소요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됨
- 또한, 이전할 상품의 목록 및 수량 확정을 위해 실물이전 신청 이후 완료시까지 해당 계좌의 상품 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,
- ETF의 분배금 지급 등 펀드의 재투자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이전 소요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


## 6

## 실물이전 신청 후 최종 이전의사 확인 필요

◆ 실물이전 신청에 대해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최종 의사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게 되므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

- 실물이전 신청시 이관회사는 이전신청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, 가입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이전에 대한 최종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
  - 동 이전의사 확인 절차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영업점 방문, 휴대폰 앱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,
  - 통화실패 등으로 가입자의 이전의사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, 이전 신청시 전화를 통한 이전 의사 확인을 선택하였다면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
## 7

## 실물이전 이후에도 가입자의 지속적 관리 · 운용 필요

◆ 퇴직연금은 금융회사가 가입자 대신 운용해주는 것이 아니므로, 실물이전 이후에도 가입자의 지속적인 관리 · 운용이 중요

- 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IRP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추후 지급받는 노후자금 규모가 변동하는 구조로,
  -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해 주는 것이 아닌 만큼 실물 이전 신청 전에 수수료 수준, 상품 라인업 등을 비교해 봐야하며,
  - 실물이전 이후에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가입자 스스로 적립금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합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